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경찰청





보도	2024.8.13.(화) 14시	배포	2024.8.13.(화)		
	금융감독원	책임자	실 장	정제용	(02-3145-8730)
담당부서	보험사기대응단	담당자	팀 장	김미선	(02-3145-8726)
	경찰청	책임자	총 경	강태영	(02-3150-2037)
	() () () () () () () () () ()	담당자	경 정	김현수	(02-3150-2168)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실 장	이윤학	(033-736-4400)
	국민선정도립하다 	담당자	부 장	이중근	(033-736-4405)

금융감독원 · 경찰청 · 건강보험공단.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 개최

- 주요 내용 -

- ▶ '24.8.13.(화)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대응 합동세미나** 개최
 - 의료분야 보험사기 조사·수사 우수사례 발표
 -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강화방안 논의
 - **개정**('24.8.14. 시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대응방향 논의

I. 개요

- □ '24.8.13.(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4.1.11. 업무협약을 체결

합동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8.13.(화) 14:00~16:30, 경찰청 어울림마당(본관 1층)
- (참석자)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경찰청** 수사국장, 경제범죄수사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등 총 30명 내외

Ⅱ. 세미나 주요내용

① 의료분야 보험사기 조사·수사사례 발표

- 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24.5~6월)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발표하였음
- 아울러,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 주도, 기업형 브로커 확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악용 등

발표 주요내용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기법,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방안
- (경찰청)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보험금 1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을 포함하여 267명을 검거한 사건 등 우수 수사사례
- (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사례

②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강화방안 논의

-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 금번 세미나에서는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유관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공동조사 사례

- 병원, 환자가 공모하여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80억원 편취
- 병원, 환자가 공모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1일 통원보험금 한도(20만원)에 맞추어 여러 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통원기록을 작성(진료비 쪼개기 수법)하여 보험금 14억원 편취

③ 개정「보험사기방지 특별법」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논의

- 금감원은 '24.8.14. 시행되는 개정「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 각 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 알선·권유죄 등 관련 수사의뢰 방식,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 범위 및 절차 등

개정「보험사기방지 특별법」주요내용

- 보험사기의 알선·권유 등 행위 금지 및 처벌
- 보험사기 행위자와 동일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신설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입원적정성 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의료분야 .	보험사	기 대용	응을 위해 곡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	개최한 최초	본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	능력을	을 한충	더 강화	하는 계기를	를 마련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
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
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